

법학의 시각에서 본 환경문제

— 환경법제의 관점에서 —

申東雲
(서울대 교수)

1. 환경법제의 변화

(1) 1963년 공해방지법

우리나라 환경관계법제의 출발점이 됨. 공해안전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공해방지조치를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명령을 통한 행정적 제재방법 및 벌금형의 부과를 도입. 시행령이 1967년에야 마련되고 주무관청이 설치되지 않아 유명무실하였음.

(2) 1971년 공해방지법의 개정

배출시설의 개념도입. 배출허용기준을 중심으로 한 배출규제확충.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그 취소, 이전명령등의 행정조치 보강. 징역형의 제재추가,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의 3대공해에 주목.

(3) 1977년 환경보전법제정

공해방지법폐지. 환경보전의 기본방침천명,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배출시설개념을 중심으로 규제대상 및 규제수단을 규정, 대기보전, 소음진동규제, 수질 및 토양의 보전 등에 관하여 각론적으로 규정함. 비용부담, 방지시설업, 산업폐기물처리, 분쟁조정 및 피해배상에 관한 사항규정, 3년이하의 징역형 벌금형 상향조정.

(4) 1979년 환경보전법개정

환경청의 발족과 관련하여 개정보완됨. 환경보전 업무의 환경청에로의 이관, 환경규제권한의 환경청에의 집중, 규제강화, 환경관계업무에 관한 관계부처의 협력확보 등 사항이 주목됨.

(5) 1980년 5공화국헌법 및 1987년 6공화국헌법 환경권의 개념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도입.

현행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1990년 환경법제의 재편성

환경청의 환경처격상과 관련된 법제정비. 1990년 8월 공포 1991년 4월부터 시행됨. (가) 환경정책기본법, (나) 대기환경보전법, (다) 수질환경보전법, (라) 소음진동규제법 등으로 구성됨. 주요항목으로는 (1) 환경보전계획수립, (2) 환경보전시책추진상황보고,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보완, (4) 환경오염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기구설치, (5) 무과실책임의 재확인 등이 있음. (가), (나), (다)의 법률 이외에 기존의 해양오염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환경관계법체계에 포함되고 있음.

(7) 1991년 환경형법의 정비

(가)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나)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다) 수질환경보전법개정 등으로 구성됨. (나), (다)의 개정은 벌칙규정의 법정형 상향조정에 그침. 주목되는 것은(가)의 특별조치법으로서 (1) 사람의 사상을 초래한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가능, (2) 과실범처벌, (3) 누범의 가중처벌, (4) 인과관계추정규정의 도입등임. 그러나 실질적 기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양벌규정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2. 환경법제의 논점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재분배

(가) 지역주민의 환경욕구와 중앙정부의 집중관리필요성

쓰레기처리장의 설치를 둘러싼 지역간의 마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 인근지역 상호간에 앞으로 많은 분쟁이 예상됨. 지역갈등의 해소와 전국적인 환경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중앙행정부서의 관리, 통제가 필요함. 그러나 지역주민의 정당한 환경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임.

(나) 미국식모델의 문제점과 한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및 실시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조정방안이 주목됨. 그러나 미

국식 모델, 즉 중앙환경행정관청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정책추진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는 연방국가성에서 유래하는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에서 연방환경행정관청의 권한강화가 타당성을 갖게 되지만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걸음마 단계에서 처음부터 중앙환경관청에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할 것임.

(2) 환경규제의 모델, 혈조형인가 갈등형인가?

그 동안 환경행정관청의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방안이 사용되었으나 폐늘사건 등을 통하여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개입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됨.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방안은 기업과 행정관청의 유착을 견제할 수 있는 이점 이외에 폭넓은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 전담수사부 또는 전문재판부의 설치 등을 통하여 사법조직내부에 환경전문가를 확보하도록 함. 이를 통하여 환경요원의 저변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기존의 환경행정요원은 계속 활용할 수 있음.)

환경범죄의 개념을 통하여 헌법소원이나 법정진술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정투쟁을 통한 시민운동의 전개가능성이 확보되고 있음. ♣

□ 도서안내 □

석유협회 창립10주년 기념

석유산업의 발전사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엮음 -